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62
----------	-------

발의연월일 : 2023. 12. 19.

발 의 자 : 윤재옥 · 유경준 · 태영호
지성호 · 金炳旭 · 서일준
박성중 · 박 진 · 김미애
윤창현 · 이종배 · 윤한홍
양금희 · 임이자 · 이현승
이명수 · 강대식 · 강기윤
백종헌 · 정우택 · 김형동
권명호 · 김영선 · 박대수
권은희 · 전봉민 · 이종성
최연숙 · 김예지 · 정경희
김석기 · 김희곤 · 박형수
의원(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사무처내규인 「국회의원 활동보조요원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요원(전문임기제 마급)을 지원하고 있으나, 활동보조요원은 법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에는 포함되지 않아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이직시 경력증명서에도 해당 의원실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면되는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경우 보좌직원에 준하는 직원임에도 면직예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고용 불안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별표 1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좌직원은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좌직원”은 “행정보조요원”으로, “국회의원”은 “위원장”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좌직원) ①·② (생략) <u><신 설></u>	제2조(보좌직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별표 1에도 불구하고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좌직원은 8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u>
제5조(면직 예고) ①·② (생략) <u><신 설></u>	제5조(면직 예고)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좌직원”은 “행정보조요원”으로, “국회의원”은 “위원장”으로 본다.</u>